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지침설명회 관련 Q&A

(공공의료평가운영팀, 2022.07.21.)

<table>
<tr><td>일시</td><td>2022. 7. 21.(목) 14:30~17:00</td><td>부서</td><td>공공의료평가운영팀</td></tr>
<tr><td>지침
설명회
개요</td><td colspan="3">❍ 일 시 : 2022. 7. 21.(목) 14:30~17:00
❍ 장 소 :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
❍ 목 적 : 2022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지침 설명
❍ 참석자 : 약 100명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 보건복지부(1) : 송지희 주무관
- 내부(6) : 임준 본부장, 이기환 팀장, 윤아리, 한혜정, 윤수진, 유예린
- 외부(약 100명) : 지자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립요양병원 실무 담당자 등</td></tr>
<tr><td>Q&A</td><td colspan="3">1. 관련지표 : 1.1.4 [환자관리 및 감염관리]
Q1. 감염관리 교육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사이버 교육도 인정이 되는지?
A1. 온라인 교육 건의 경우, 조사표 작성 시 해당 건은 온라인으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해서 기재 요청드리며, 온라인 이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이나 교육 완료 증빙 서류를 첨부 서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교육실시</th><th rowspan="2">참석자 수(명)</th></tr><tr><th>횟수</th><th>시간</th></tr><tr><td>기타(전체교육 등)</td><td>1</td><td>2</td><td>oo명(온라인 개별교육)</td></tr></table>
Q2. 감염관리 실무수행에 적합한 경력이 의료기관 근무경력 3년이상인데, 3년경력이 간호실무 업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실무경력 2년, 간호행정(QPS, 감염관리 보조업무) 1년 이상일 경우 감염관리 실수행에 적합한 경력이 되는지
A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호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 및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에 의거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의 실무수행 적합 경력 기준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2. 관련 지표 : 2.1.6 [퇴원환자 관리]
Q. 퇴원환자 관리와 연계실적을 치매지원사업 대상자에만 국한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치매진단이 없는 경우도 사례에 따라 퇴원시 상담과 계획 후 자원을 연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치매지원프로그램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이 평가 범위가 너무 좁다고 생각됩니다.</td></tr>
</table>

A. 2.1.6[퇴원환자 관리] 지표는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운영에 대해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치매퇴원환자로 한정하여 평가하며, 평가 중복 방지 및 평가 효율화를 위해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결과' 평가 결과를 활용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실적인 치매환자 포함 전체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상담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실적은 2.1.5[의료지원 상담]에 포함하여 상담 및 지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관련지표 : 3.2.1 [보건안전체계]

Q. 3.2.1 산업안전 보건관리자의 경우 300명 미만 기관에서 전담만 인정되는지(겸임은 불인정인지?)

A.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인력은 전임으로 배치되어 근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일 경우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임이 가능하나,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 을 고려해서 배치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력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3)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1명 이상
전임/겸임/위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 제19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자는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00명 이상 : 전담 300명 미만 : 겸임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제23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00명 이상 : 전담 300명 미만 : 겸임가능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호)

1.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 최소시간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4. 관련지표 : 3.4.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리]

Q. 2021년 치매안심병동 기능보강사업 승인이후 2022년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부분에서는 21년도 기준으로 지원금액 기재하면 될지?

A. 시설장비 및 현대화 지원, 경상운영비 지원은 교부된 시점 및 교부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되, 다만 2021년에 지원금을 교부받고, 2022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교부금액을 사업수행년도로 나누어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기능보강사업 지원금 10억을 2021년 교부받고 해당 기능보강 사업이 2022년에 완료되는 경우, 2개년으로 나누어 5억으로 작성

5. 관련지표 : 기능보강사업 지원받은 기관에 따른 지표 해당/미해당 적용 지표

Q.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지원받은 병원이라는게 현재 치매안심병원으로 등록된게 아니라 치매전문병동만 운영하는 병원도 말하는 건가요?

A.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사업을 받은 병원' 은 치매안심병원 지정 여부 및 기능보강사업 공사완료 여부 상관없이 2017년 이후 기능보강사업을 지원받은 병원 전체를 말합니다.